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박석 의원
- 의안번호 : 제1982호
- 발의일자 : 2024년 8월 9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2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4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 제2항¹⁾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이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·관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동 조례 제3조제2호²⁾ 및 별표 1³⁾에 따라 서울시 가로수는 서울시 및 자치구(25개)가 소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청에서 수립한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표는 해당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1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시행 2024. 7. 24.][대통령령 제34740호, 2024. 7. 23., 일부개정]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.

2) 제3조(정의) 2. "관리청"이란 별표 1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
3) [별표 1] 가로수관리청

가로수관리청(제3조제2호 관련)

구 분	관리청
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	안전총괄실장
2. 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서울역 사거리)의 가로수 설치·관리	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
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	구청장